

‘21년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

I 목 적

- ☐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
 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*를 자체적으로 심사·확인토록 하여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
 - *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·확인받는 제도

II 관련 규정

- ☐ 산업안전보건법 제 42 조제 1 항, 시행규칙 제 42 조제 5 항·제 6 항 및 제 47 조, 시행규칙 별표 11,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2 호(2020. 1. 7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)
- ☐ (지정 기준)
 - 건설산업기본법 제 23 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 위 이내 건설업체 중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라 산정한 직전 3 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*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23 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 위 이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 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율 이하이며,
 - 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 5 조(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)에 따라 2021 년도의 경우 직전 3 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율은 직전 2 년간(19, 20 년)의 **사고사망만인율(1.40)**을 적용함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(영 별표 4 제 8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 1 명 이상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 있고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 조제 1 항제 7 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 점 이상인 건설업체

※ '20.8.1. ~ '21.7.31. 기간 동안 동시 2 명이상 근로자 사망재해가 없어야 함

III 지정 결과

- ☐ (지정 기간) '21. 8. 1. ~ '22. 7. 31.(1 년)
- ☐ (지정 업체) 삼성물산(주) 등 39 개 건설업체

시공순위	건설업체명 (굵은 글씨: 2년 연속 선정 업체)
100위 이내 (37개사)	삼성물산(주), 현대건설(주) 디엘이앤씨(주), 지에스건설(주), ㈜포스코건설, ㈜대우건설, 현대엔지니어링(주), 롯데건설(주),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(주), 에스케이에코플랜트(주), ㈜호반건설, ㈜태영건설, 삼성엔지니어링(주), 디엘건설(주), 코오롱글로벌(주), ㈜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, 금호건설(주), ㈜케이씨씨건설, 제일건설(주), ㈜한양, ㈜한라, 신세계건설(주), 엘티삼보(주), ㈜부영주택, 에스지씨이테크건설(주), 화성산업(주), ㈜한진중공업, ㈜서한, 대보건설(주), 아이에스동서(주), 신동아건설(주), ㈜케이알산업, 동원건설산업(주), 경남기업(주), 대우조선해양건설(주), ㈜모아종합건설, 삼환기업(주)
101위~ 200위 이내 (2개사)	한일건설(주), 위본건설(주)

- ☐ (혜택) 향후 1 년간('21.8.1.~'22.7.31.) 지정 건설업체가 착공하는 모든 현장의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·확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·확인 면제
- ☐ (지정 해제) 지정 건설업체에서 동시에 2 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제외하고, 안전보건공단의 심사·확인 재개

※ 사망재해 1 명 발생 시 해당 현장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공단의 확인 재개

IV

행정 사항

- (대상 통보) 지정 건설업체 명단(39 개사)을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통보하고, 공단은 지정업체에 개별 통보

※ 행정처리 상 7.31 일 이전 결재를 시행하더라도 당해 연도 7.31 일까지 동시 2 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사업장은 즉시 제외하고 통보

- (사후 관리)

○ 지방관서

- 지정 건설업체 시공현장에서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정기감독 등 실시
- 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하다고 통보받은 현장에 대하여 지도·점검 실시

○ 안전보건공단

- 지정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사·확인 내용에 대한 선별 모니터링*을 실시하되,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한 현장은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

*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, 위험공정 자체확인 등에 대한 지도·조언 실시

- 지정 건설업체 현장에서 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에 따른 사망재해 발생 시 확인 재개